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60
----------	-------

발의연월일 : 2026. 5. 26.

발 의 자 : 이달희 · 김예지 · 이종배
강선영 · 김정재 · 서천호
김은혜 · 고동진 · 최보운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의 업무집행과 회계처리를 독립적 지위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의 경우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법정적립금을 유사 사례와 동일하게 대손금 상각이 아닌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고의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회계유용성 제고를 위해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용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등).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근이사는”을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매 사업연도마다”를 “사업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을 “손실금의 보전(補填)”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 사업연도마다”를 “사업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를 “미처분이월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
분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
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금고는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
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⑥ ~ ⑩ (생략)

사업연도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미처
분이월금, 특별적립금, 임의적
립금, 법정적립금의-----

⑥ ~ ⑩ (현행과 같음)